

의안번호	제 297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김정일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5월 26일

#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김정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9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5월 26일  
발 의 자 : 김정일, 이상정, 김정일,  
박봉순, 안치영, 조성태,  
박지현

## 1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, 기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, 목적, 사업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
  - (기존)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
  - (변경)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-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정비함(안 제3조)
- 센터의 입주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예고대상
- 협의 :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
- 비용추계 : 붙임

##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충청북도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치)**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(북대동)에 둔다.

**제3조(사업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 지원
2. 회의실 및 교육장 대관 지원
3.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4조(입주대상 등)** ① 센터의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도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다.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
2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

② 센터에 입주하는 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시설 이용료의 징수 등)**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는 경우: 이용료 면제
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한 행사: 이용료의 50퍼센트 경감

**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**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, 이를 변경하여 시행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**제7조(관리·운영비 지원)** 센터의 관리·운영에 드는 경비는 이용료, 수탁자부담금,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다만,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

센터 이용료

구분	기준	이용료		비고
		기본	추가	
다목적실	평일 2시간 이내	50,000원	• 기준시간 초과 이용 : 시간당 20퍼센트 가산	냉·난방시설 이용시 : 실비 정산하여 부과하며,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.
	토·일·공휴일 2시간 이내	100,000원		
기타시설		운영규정에 의한 실비		

# 관계 법령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61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.

## □ 사회복지사업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회복지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·선도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 무료 숙박, 지역사회 복지, 의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 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나. 「아동복지법」

다. 「노인복지법」

라. 「장애인복지법」

마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
바. 「영유아보육법」

사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- 아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  - 자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  - 차. 「입양특례법」
  - 카. 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
  - 타.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
  - 파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  - 하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  - 거. 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」
  - 너. 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  - 더. 「의료급여법」
  - 러. 「기초연금법」
  - 머. 「긴급복지지원법」
  - 버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  - 서. 「장애인연금법」
  - 어.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
  - 저.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
  - 처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
  - 커.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
  - 터.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  - 퍼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  - 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
2. “지역사회복지”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.
  3. “사회복지법인”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
4. “사회복지시설”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.
5. “사회복지관”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.
6. “사회복지서비스”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7. “보건의료서비스”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#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, 기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, 목적, 사업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대관에 따른 이용료

## 3.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5조(시설 이용료의 징수 등)

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대관 시 이용료 면제
- 냉난방 이용 시 실비 정산 후 부과

### 나. 추계 결과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대관 시 이용료 면제  
→ 기존에도 지자체 대관 요청 시 이용료 면제하고 있어 수입금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
- 냉난방 이용 시 실비 정산 후 부과  
→ 사용면적 × 부하요금 × 사용시간으로 계산하여 부과

구분	산출근거	비고
기존(안)	이용료 × 20% (예시) 50,000원(이용료) × 20% = 10,000원	2시간 기준
개정(안)	사용면적 × 부하요금 × 사용시간 (예시) 391.2㎡ × 79.1원(부하요금) × 2시간 = 61,887원	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